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영양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39,158,080원 및 각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합계 3,642,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미 관련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국유임산물 낙찰자들이 취득한 나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입목'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192(원고 승소) → 서울고등법원 16누81804(피고 항소기각) → 대법원 17두52368(피고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별지

목 록

(단위 : 원)

계약일	2010. 11. 17.	2011. 6. 17.	2012. 1. 9.	2012. 11. 29.	2013. 4. 25.	2013. 8. 20.	합계
처분일	2015. 10. 1.	2015. 11. 18.	2016. 12. 5.	2016. 12. 5.	2016. 12. 5.	2016. 12. 5.	
과세표준	345,750,000	204,500,000	327,000,000	191,500,000	78,700,000	85,300,000	1,147,450,000
취득세액(a)	6,915,000	4,090,000	6,540,000	3,830,000	1,574,000	1,706,000	24,655,000
무신고 가산세액(b)	1,383,000	818,000	1,308,000	766,000	314,800	341,200	4,931,000
납부불성실 가산세액(c)	3,539,090	1,791,420	2,460,340	1,069,710	370,670	340,850	9,572,080
가산세 소계(b+c)	4,922,090	2,609,420	3,768,340	1,835,710	685,470	682,050	14,503,080
취득세 (a+b+c)	11,837,090	6,699,420	10,308,340	5,665,710	2,259,470	2,388,050	39,158,080
농어촌 특별세액(d)	691,500	409,000	654,000	383,000	157,400	170,600	2,465,500
무신고 가산세액(e)	138,300	81,800					22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액(f)	353,900	179,140	246,030	106,970	37,060	34,080	957,180
가산세 소계(e+f)	492,200	260,940	246,030	106,970	37,060	34,080	1,177,280
농특세 소계 (d+e+f)	1,183,700	669,940	900,030	489,970	194,460	204,680	3,642,780

끝.